<간이투자설명서> 기준일: 2022.10.30

한화아세안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75073]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흥시장위험, 시장위험 및 투자신탁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한화아세안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모투자신탁인 한화아세안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룩셈부르그에 등록된 제이피모간펀드(JPMorgan Funds)에 속한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세안 펀드(JPMF-ASEAN Fund)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세안 펀드(JPMF-ASEAN Fund)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펀드명	JPMF-아세안주식 펀드(JPMF-ASEAN Equity Fund)
기준통화	미달러화(USD)
벤치마크	MSCI AC ASEAN 10/40 Index (Total Return Net)
투자목적	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주) 회원국들의 회사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은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아세안 소속 국가들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입니다. 아세안의 구성원 국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전략	주) 이 항목에 기재된 사항은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기재사항은 본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자산(현금 및 현금 등가물 제외)의 최소 67% 이상을 아세안 회원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아세안 회원국 지역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지분증권에 투자합니다. -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는 신흥시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하위집합투자기구는 다른 나라(특히 중국)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아세안 회원국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채무증권, 현금 및 현금등가물도 부수적으로 보유될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UCITS 및 다른 UCI들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모든 통화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통화위험은 헷지됩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헷지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을 위하여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특성	- 투자자산의 가치는 등락할 수 있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공격적으로 운용되고, 큰 규모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단기간에 큰 규모로 투자대상자산을 교체함으로써 시장의 특정 영역에 상당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분 증권의 가치는 개별 회사의 성과 및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할 수 있습니다. - 신흥시장은 정치적, 규제적,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대, 발달되지 못한 보관 및 결제절차, 낮은 투명성 그리고 높은 재무적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통화는 불안정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증권은 선진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산업 분야 또는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된 펀드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높은 소규모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규모회사의 주식보다 더 큰 재무적 위험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환율의 변동은 투자자들의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통화헷징은 항상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MSCI AC ASEAN TRN Index(USD) 90% + MMI Call10%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 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2% 이내	1.91	1.00	1.000	1.9145	314	517	731	1,191	2,5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없음	2.41	1.50		2.4100	247	496	745	1,247	2,703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1.41	0.50	0.640	1.4100	194	345	503	845	1,859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91	1.00	0.860	1.9143	196	402	619	1,084	2,46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1.26	0.35		1.2600	129	265	407	714	1,624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 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1.10.31 ~ 22.10.30	20.10.31 ~ 22.10.30	19.10.31 ~ 22.10.30	17.10.31 ~ 22.10.3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07-10-19	-14.77	4.99	-2.57	-1.27	-0.35
비교지수(%)		-14.07	1.65	-4.96	-2.36	1.67
수익률변동성(%)		15.11	14.59	20.10	17.20	19.23

* 비교지수: MSCI AC ASEAN TRN Index(USD) 90% + MMI Call10%(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단위: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청미	1994년	책임(매니저)	9	270	-	-	-13.00	3.84	3개월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신흥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재산을 투자하는 몇몇 신흥 시장의 회계, 감사, 재무 보고 관련 기준은 국제 기준에 비하여 덜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몇몇 기업들은 특정한 주요 공지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흥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신흥 시장 국가들은 근대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와 관련하여 매우 높은 수위의 직접적인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갑작스럽고 광범위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경제와 투자신탁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시장의 국유화・몰수・세금징수・외국환 규제・정치적 변화, 정부 규제・사회적 불안정・외교 상황과 제한적 유동성, 가격 변동성, 외국인 투자 및 자본에 대한 규제와 같은 작은 자본 시장 투자의 위험, 그리고 높은 물가 인상과 금리, 정치・사회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신흥 경제와 관련된 위험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흥시장과 관련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함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투자신탁위험	모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기준가격은 원화로 표시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하위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표 환헤지비율은 환헤지 가능 순자산의 70%이상이며 최대100%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부족, 거래상대방 부족,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외환관련 파생시장에 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헤지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헤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산출에 있어 외국주식과 환헤지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의 평가반영 시점이 상이한 경우 헤지효과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자산 표시통화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환율상승)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통화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7영업일(D+6)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table>
<tr><td rowspan="2">기준가</td><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r><td rowspan="4">과세</td><td colspan="2"><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 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td></tr>
<tr><td colspan="2">·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P/CP-E/S-P/P 클래스 가입자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 이하 '연금계좌'라 합니다)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에 대한 과세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는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을 통하여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투자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이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해당 투자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헷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헤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계좌와 관련된 과세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및 개별 가입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고,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td></tr>
</table>

전환절차 및 방법	**(종류 수익증권간 전환)**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이하 "최초매수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처리를 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집합투자업자	한화자산운용㈜ (대표번호 :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anwhafund.com)		
모집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제한없음
효력 발생일	2022년 11월 10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 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개인100억, 법인50억 (I)	최초 납입금액 100 억 이상 개인 또는 50 억 이상 100 억 미만 일반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법인100억 (F)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또는 최초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일반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